

## 3. 의견제출

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e.go.kr> 법령·정책/입법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반대시 사유 명시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
- 전자우편 : sanghyukan@korea.kr
- 팩스 : 044-201-7351

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(전화 044-201-7347, 734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●환경부공고제2020-997호

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·전자제품(고시)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7일

환 경 부 장 관

「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·전자제품」 제정고시안 행정예고

## 1. 제정이유

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·전자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2020.11.24.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유해물질 사용제한의 제외대상 전기·전자제품(안 제2조제1항)

군수품(전비품에 한함)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전기·전자제품을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으로 규정함

나.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의 인정기준(안 제2조제2항 및 별표)

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의 인정기준을 별표로 규정함

## 3. 의견제출

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·전자제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

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자원재활용과장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다. 기타 필요사항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(전화 : 044-201-7390, FAX : 044-201-7394, 전자우편 : leemari@korea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●고용노동부공고제2020-467호

「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」(고용노동부 고시)를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7일

고용노동부장관

「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」 제정 행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른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(이하 ‘출산전후급여등’이라 한다)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I. 출산전후급여등의 상·하한액

##### 가.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

: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,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

-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

: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,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

##### 나.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

: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,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

-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

: 12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,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

다.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) 미만인 경우: 일수로 계산한 금액

##### II. 행정사항

##### 가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# 나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